

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
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채용대상자는 제외)의 요청
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식회사 케이프 각 채용 전형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
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
습니다.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
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
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
등기우편 또는 이메일(bizadmin@cape.co.kr)로 제출하며, 제출이
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
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
하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발송주소>

(우 50580)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

주식회사 케이프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앞

- 당 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
아니할 경우에는 **개인정보보호법**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에 따라
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청구인	지원분야	성명	생년월일
주 소	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
반환청구서류	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주식회사 케이프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